

[FTA 100% 활용하기]

콜롬비아 통상환경

- 개정된 관세법을 중심으로 -



Sandra Mora Pardo&Associates(Colombia) 개인 컨설턴트



콜롬비아 국가개요

지난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하였다. 콜롬비아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국가이나, 광물 자원 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콜롬비아의 정식국명은 콜롬비아 공화국(Republic of Colombia)이며, 중남미에서는 대표적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행정구역은 32개주이며 1개 수도주로 되어 있다.

콜롬비아와의 주요 교역국은 수출의 경우 미국, 중국, 파나마, 스페인, 에콰도르 등이며, 수입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독일, 프랑스 등이다. 교역품목은 수출의 경우 1차산품인 석유, 석탄, 보석, 커피, 금, 광물 등이며, 수입품목은 컴퓨터, 자동차, 플라스틱 등의 완성품을 수입한다.

콜롬비아 관세제도

우선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시장 (Comunidad Andina)의 일원으로서 안데안 대외 공동 관세에 준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산정 방식은 종가세 (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콜롬비아의 품목군 별 관세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관세율	대상 품목
기본 체제	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예외	35%	승용 승용차
	15%	화물 승용차
변동관세		농산물

자료: 코트라 콜롬비아 무역관

한편 관세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고,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협정명	해당국가
Comunidad Andina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PAR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 AELC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FTA Canada	캐나다
FTA Chile	칠레
FTA USA	미국
FTA Mexico	멕시코

자료: 코트라 콜롬비아 무역관

한편 콜롬비아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관세율 책자를 구입하거나 발간업체 홈페이지 유료 가입을 통해 알 수 있다.❶



❶ 코트라 자료

개정된 콜롬비아 관세법

개요

콜롬비아 수출입 통관환경은 최근 개정된 콜롬비아 규정(Decree 390 March 2016)을 통해 설명된다.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와 맺은 국제 무역 협정들(그 중에서도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및 대한민국),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교토협약)과 WTO의 '무역 원활화 조약'에서 파생된 국제 약속들을 반영하여 최근 그들의 세법을 개정했다.

지난 2016년 3월 7일 법령 제390호가 제정 되었고, 이 법령은 국가법으로 통합하려는 신규세관법령이다. 본 문서에서는, 새로운 법령에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관점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일단 발효가 되거나 시행이 된다면, 세관 이용자들에게 전보다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법령은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며, 통합 및 표준화가 된 디지털 세관 시스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법령에는 새로운 법적 가이드라인의 점진적인 적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세관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하고, 대·내외 사용자들에게 트레이닝 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계기로, 지난 3월 22일부터 원산지 사전 심사, 관세청의 선택적 사용 그리고 관세청의 보증분야는 해당시스템이 시행 되었다.

신규 법령 제정의 목적

이 신규 법령의 제정은 최근 15년간, 앞에서 언급했던 나라들과의 무역 협정의 발효에 대한 회신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관세 조례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관세 분야의 신규 국제 약속들과 협정 준수란의 조화가 개정의 필요성 이었다.

실제로, 새로운 콜롬비아의 관세에 관한 법령은 세관 수속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 협약 (교토 협약)에서 착안 한 것이다. 이 협약에서처럼, 위험 관리시스템에 기초하여, 상품과 서류의 통관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와 세관이 실행하는 일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는 최소한의 필요한 세관 통제만 실시하고, 세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발리에서 합의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들인 원산지사전심사 시행, 특송 화물, 위험 관리 모델의 채택, 전자적 지급, 세관 대리인들의 선택적 사용,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상품의 반출 및 통과 등도 반영되었다.

2016년 법령 390조는 대외 무역을 시행할 때 물류관리 라인에서의 안정성과 용이성,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세관 당국의 능력과 실질적인 이용 등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도 반영되었다.

이렇게, 수·출입, 통관 측면에서 관세절차의 실행 뿐만 아니라, 이전에 맺어진 협약 가이드 라인에 의해 세관보세창고 및 상호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 입·출고 관련 특별 절차들이 생성 되었다. 또한, 검역이 이루어지는 도착 지점에서 관세청과는 다른, 통제 당국의 검역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역 동시 검역소'가 설립되었다.

AE0제도 근거하여 신뢰도가 있는 수출업자에 쉽게 통관 수속 가능

2016년 법령390조의 세관 수속은 전 협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2014년 콜롬비아에서 수출업자들과, 혹은 다른 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조건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세관 통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0)에 근거하여,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 쉽게 통관 수속을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법적 효과를 위해서,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사용자들 즉, 세관 당국에서 판단했을 때, 경제적인 지불능력을 가졌고, 그들의 채무 의무를 이행한 상태이며, 무역 사업자인 사람들을 식별하는 위험 관리시스템 설립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규칙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용자들을 위한- 생략된 통관 절차, 수입세의 통합결제 및 후불결제, 간소화된 통관신고 절차가 포함된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의 논란 혹은 특혜관세를 요구하는 행동과 같은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서의 요구가 없어진다.

위험정도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초한 사용자들의 선발은 무역 촉진에 기여하고, 상품과 사업자들을 관리하며 모든 세관 절차가 동일하고 표준화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2016년 법령 제390호의 가장 핵심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분류된 사업자 혹은 관리 시스템에서 낮은 위험 수준을 가진 신뢰가 있는 사업자들의 최소한의 정보와 서류로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선택적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하는 것이다.

관세청을 통해야 하는 의무절차들이 그들의 창고에서 어떤 보증서를 보여 줄 필요 없이, 콜롬비아에 도착 후 48시간 내에 통관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거되었다. 이는 통관 절차를 위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고, 도착지에서 상품들의 픽업이 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관세평가기준, 원산지 법규 적용, 관세평가, 관세의 면제와 환급 유예, 원산지 표시 등을 알기 위하여 관세품목분류에 한정되어 있었던 사항들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원산지 사전 심사로 영역과 범위를 늘렸다.

이런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행과 채택을 위한 확정조건이 정해졌고, 원산지 사전 심사를 무기한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발행을 위한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렇듯,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특혜 관세를 사용 한다면, 관세청의 주도 하에 정확하고 광범위한 사전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것이 2016년 법령 제390호의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각각의 무역협정은 준비된 메커니즘이 우위에 있다.

2016년 법령 제390항의 신규 관세 규정 중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예 방책으로 채택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부패성 상품 경우까지도 포함하며, 다른 통제 당국이 실행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 커니즘을 사용한다. 또한, 콜롬비아와 이웃한 나라들 간 상품 이동 시 국경 교통을 쉽게 하는 절차의 설립과 이민국과 위생 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게다가 최대 미화 200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서류 및 샘플을 포함한 상품의 반입을 위해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을 조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위 종류의 상품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특송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행자의 경우 위에 서 언급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는 상품 반입 한도 금액 역시 높아졌다.

수입권과 수입세, 수입보세가공제도에 관한 내용 포함

2016년 법령 제390호에는 산업 재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재 및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상품의 반입을 위해 수입권과 수입세, 수입보세가공제도 및 역 외가공제도의 가동관(임시통관)을 중단하는 제도 하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범으로 분류되는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수출입업자들에게 더욱 엄격히 제재를 가하게 될 새로운 관세 제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새로운 관세 절차의 수령자에 게 간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엔 경고와 같은 제재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책임 면제, 과세 절감의 가능성 그리고 행정 처벌 절차 에 대한 독립된 두개의 결정기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정할 예정이 다.

관세법의 올바른 적용과 의무, 세금 및 세금 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유용 한 정보의 제공과 교환을 위해 2016년 법령 제 390호는 관세청 및 민간 기 업과의 기술 지원 및 협력 협정 체결 또한 예상하고있다.

● 해당 내용은 스페인어 원문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사항은 최대 2년내에 시행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이 기간은 실시간으로 새로운 관세 절차를 허가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②

맺음말

국내총생산 3,596억달러, 인구 4,822(추정)만명에 달하는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의 핵심 소비시장으로 손꼽히는 국가이다. 특히, 한-콜롬비아 FTA의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는 이제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콜롬비아로 수출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콜롬비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 협정을 체결한 첫번째 국가로써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된 관세법 내용을 잘 확인하여 FTA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FTA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Pardo&Associates(Colombia) 의 개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Sandra Mora 가 기고하였으며,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스페인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은 저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콜롬비아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